

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86
----------	-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·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읍·면 기관명을 변경함

2. 주요내용

가. 읍·면 기관명 변경함(안 별표)

- 거창읍사무소 ⇒ 거창읍 행정복지센터
- 위천면사무소 ⇒ 위천면 행정복지센터
- 가조면사무소 ⇒ 가조면 행정복지센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'16. 11. 02. ~ 11. 22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- (6) 도내 조례 개정현황
 - 개정완료(4곳): 진주시, 김해시, 의령군, 남해군
 - 개정 중(3곳) : 창원시, 통영시, 고성군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명 “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”를 “거창군청,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·읍·면사무소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에 따라 거창군청,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군·읍·면사무소</u>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거창군청,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에 따라 <u>거창군청,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</u>-----</p>

[별표]

거창군청,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

기 관 명	소 재 지
거창군청	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<u>거창읍 행정복지센터</u>	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
주상면 사무소	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
옹양면 사무소	거창군 옹양면 옹양로 1431
고제면 사무소	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
북상면 사무소	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
<u>위천면 행정복지센터</u>	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
마리면 사무소	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
남상면 사무소	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
남하면 사무소	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
신원면 사무소	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
<u>가조면 행정복지센터</u>	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
가북면 사무소	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-16